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7
----------	-------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김진표 · 고용진 · 김병주
김상희 · 김영주 · 박재호
변재일 · 설 훈 · 신정훈
안규백 · 우원식 · 윤호중
전혜숙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초에야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가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에 국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자원배분의 중요방향이 정부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재정권한이 정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가적 자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야별 자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다. 현재 5월 30일까지인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변경함(안 제60조 및 제61조).
- 라.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85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 중 “5월 20일”을 “5월 10일”로 한다.

제61조 중 “5월 31일”을 “5월 15일”로 한다.

제85조 중 “제35조”를 “제32조의2·제3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정감사 및 결산심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결산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30조의2(분야별 재원배분방안</u> <u>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u> <u>은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u> <u>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u> <u>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u> <u>보고하여야 한다.</u>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u> <u>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재</u> <u>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u> <u>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u> <u>부터 통보받은 중앙관서별 지</u> <u>출한도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u> <u>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u> <u>보고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한</u> <u>의견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u> <u>게 제시할 수 있다.</u> ⑤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u> <u>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재</u> <u>정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u> <u>제4항에 따라 제시된 소관 상</u>

③ (생략) <신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u>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u>제32조의2(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u> 제60조(결산검사) ----- ----- ----- -----5월 10일-----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 -----5월 15일----- -----. 제85조(준용규정) -----제32조의2·제35조----- ----- ----- ----- -----.
---	---